

## (5)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노후를 맞이했을 때나, 신체에 장애를 받거나, 생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남편과 사별하거나 하여 수입이 없어짐으로써 곤란해질 경우 등을 대비하여, 모두가 보험료를 함께 내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 25년간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연금은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인의 자격이 다르므로 국민연금계에 문의해 주십시오.

시청 시민생활부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계  
전화 237-1161 내선 3328~31

## (6) 세 금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에는 크게 나누어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 ① 국세

#### ● 소득세

1년간의 개인 소득에 대해서 가해지는 세금입니다. 매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세무서에 전년도의 소득신고서를 제출하고 납세합니다. 단, 급여 이외의 수입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매월 월급으로부터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의처  
코후 세무서 코후시 마루노우치 1쵸메 11-6  
전화(대) 233-3111

### ② 지방세 (개인의 현민세 및 시민세)

#### ● 주민세

1월 1일 현재 코후시에 살고 있고,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 · 세액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균등분배와 소득분배 금액의 합계를 납부하게 됩니다.

#### · 신고

매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사이에 시청에 신고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람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무서에서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한 사람
- 급여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근무처로부터 급여지불보고서가 제출되어있는 사람

#### · 통지

6월 초순에 납세통지서(검 납부서)가 발송됩니다.

#### · 납기

6월, 8월, 10월, 다음해 1월의 4회입니다.

문의 시청세무부 시민세과

전화 237-1161 내선 3506~10

#### ● 고정자산세

매년 1월 1일(부과 기일) 현재, 시내에 토지, 가옥, 상각자산(사업용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부해 받는 세금입니다.

#### · 세액

과세 표준액 × 1.4/100

#### · 통지

4월 중에 납세통지서(검 영수증)가 발송됩니다.

#### · 납기

4월, 7월, 12월, 다음 해 2월의 4회입니다.

문의 시청세무부자산세과

전화 237-1161 내선 3517~25

#### ●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는 도로·공원·하수도 등, 도시 시설의 건설·정비를 포함한 도시계획 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시가지화 구역 내의 토지와 가옥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정자산세와 함께 납부해 받는 세금입니다.

#### · 세액

과세 표준액 × 0.2/100

#### · 통지

4월 중에 고정자산세 납세통지서(검 영수증)에 합산하여 발송됩니다.

문의 시청세무부자산세과

전화 237-1161 내선 3517~25